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 26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인요한 · 이만희

김선교 · 유상범 · 나경원

김도읍 · 이종배 · 최은석

최보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.

또한, 공공기관을 공기업 ·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직원 정원 · 수입액 · 자산규모가 공기업 · 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 · 준정부기관 · 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 ·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 · 수입액 · 자산규모가 공기업 · 준

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, 직원 정원이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6조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직원 정원,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직원 정원,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

나.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가목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나 직원 정원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을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

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과 그 사유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공공기관의 구분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	제5조(공공기관의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.
1. 공기업 · 준정부기관: <u>직원 정원,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</u>	1. ----- <u>다음 각</u> <u>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기관</u>
<u><신 설></u>	<u>가. 직원 정원, 수입액 및 자</u> <u>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</u> <u>관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가</u> <u>목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</u> <u>나 직원 정원이 해당 기준</u> <u>에 미달하는 기관으로서</u> <u>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</u> <u>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</u> <u>는 기관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</u> <u>호나목에 따른 기관을 공기업</u> <u>·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</u>

